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 관련 사항**  **조정에 관한 공고**  2015년 제83호  <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>, <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>, <제4기 해정심사비준항목 취소·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>(국발[2007]33호)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 관련 사항을 조정한다.  1.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의 위생허가를 취소하고 <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 위생허가증> 발급을 중단하며 검사검역기구는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에 대한 위생감독과 검역감독을 강화해야 한다.  2. 검사검역기구가 국경 출입국장 관련 업체에게 발급하는 기타 위생허가증을 <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증>으로 통합하고 2015년 9월 1일부터 <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증>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9월 1일 전에 발급한 위생허가증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.  3. 각 급 검사검역기구는 국경 출입국장 종업원 건강증(<국경 출입국장 식품 종업원 건강증> 및 <국경 출입국장 서비스업 종업원 건강증> 포함)의 발급(갱신)을 중단한다. 관련 종업원은 법률,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명을 취득해야 한다.  4. 종업원의 건강증명을 국경 출입국장 위생허가의 전치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. 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이 공고 공표일 전에 발급(갱신)한 <국경 출입국장 식품 종업원 건강증>과 <국경 출입국장 서비스업 종업원 건강증>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. 이 공고 공표일 전에 발급한 <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출입국장 저장장소 위생허가증>은 이 공고 공표일로부터 폐지된다.  질검총국  2015년 7월 9일 |  | **质检总局关于调整国境口岸卫生许可有关事项的公告**  2015年第83号  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》《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》《国务院关于第四批取消和调整行政审批项目的决定》（国发〔2007〕33号）规定，现对国境口岸卫生许可相关事项进行调整。  一、取消国境口岸储存场地卫生许可，停止核发《国境口岸储存场地卫生许可证》，检验检疫机构应当加强对国境口岸储存场地的卫生监督和检疫监督。  二、检验检疫机构对国境口岸相关单位的其它卫生许可证件合并为《国境口岸卫生许可证》，《国境口岸卫生许可证》自2015年9月1日起正式启用，9月1日前发放的卫生许可证件自有效期截止之日前继续有效。  三、各级检验检疫机构停止发放（换发）国境口岸从业人员健康证（包括《国境口岸食品从业人员健康证》和《国境口岸服务行业人员健康证》）。相关从业人员应当按照法律、行政法规规定取得健康证明。  四、从业人员健康证明不作为国境口岸卫生许可的前置条件。  本公告自发布之日起生效。本公告发布之日前已发放（换发）的《国境口岸食品从业人员健康证》和《国境口岸服务行业人员健康证》在有效期截止之日前继续有效。本公告发布之日前核发的《中华人民共和国国境口岸储存场地卫生许可证》自本公告发布之日起作废。  质检总局  2015年7月9日 |